#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81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 김수흥・오영훈・윤준병

민홍철 · 신영대 · 박찬대

고용진 · 김회재 · 박재호

김진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외식산업 위축 등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가 급감되고 있으며, 더욱이 유래없는 장마 및 태풍피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신협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이들 조합법인에 대한법인세 과세특례가 2020년말 일몰종료 예정임.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수협은행을 분할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였는바,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 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명칭사 용료와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게 제공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 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
-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8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 과세특례) ①-----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2023년 12월 31일---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 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 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 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 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 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 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 세를 하지 아니한다.

- 1. ~ 8.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 ① ~ ⑥ (생 략)
  -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u> 2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u>2020</u>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 1. ~ 3.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
	① ~ ⑥ (현행과 동일)
	⑦ <u>20</u>
	23년 12월 31일
	8
	<u>2023</u>
	<u>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